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 의 · 의 결

안건번호 제2016 - 13 - 050호

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16. 3. 10.

주 문

1.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과태료 1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대상

- 조사대상 기간('15.7.1.~'16.1.31.)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'단말기유통법')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155개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.

2. 행위사실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 -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서면으로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,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영업을 하였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2월 2일 '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.

II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은 (i)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,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(ii)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·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.

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

제8조(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)

-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실조사 등)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(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8조(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)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.

III. 시정조치 명령

1. 위반행위의 중지

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2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한다.

< 공표문안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행위로 인하여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2016년 0월 0일 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--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3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

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게시한 공표문의 사진 제출 등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IV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기준금액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구분	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차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6호	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	100	300	600	1,000
		대규모유통업자	500	1,500	3,000	5,000

※ "대규모유통업자"란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,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에 속하는 대리점·판매점을 말하며, 피심인들은 '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'에 해당 한다.

2. 추가적 가중 및 감경

피심인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은 없다.

3. 최종 과태료

이에 따라, 피심인에게 사전승낙서 영업장 게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,0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V. 결론

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(시정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 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위원장

최 성 준



부위원장

김 재 홍



위원

김 석 진



위원

이 기 주



위원

고 삼 석

